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7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5월 17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5월 17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환경과장)

#### 가. 제안이유

-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추가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변경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유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안 제5조제1항, 제5조제4항)
  - 대형폐기물의 배출 방법(온라인) 추가
  - 사용하지 않은 신고확인증 환불 방법 변경
-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변경(안 [별표 3])
  -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 수수료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욱)

※ 검토보고서 전문 .....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 5. 17.)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옥)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제출
- 제안일자 : 2024. 5. 7.
- 회부일자 : 2024. 5. 17.
- 상정일자 : 2024. 5. 17.

### 2. 제안이유

-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추가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변경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유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안 제5조제1항, 제5조제4항)
  - 대형폐기물의 배출 방법(온라인) 추가
  - 사용하지 않은 신고확인증 환불 방법 변경
-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변경(안 [별표 3])

-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 수수료 변경

## 4. 검토의견

### 가. 관련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서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14조에서 지자체장은 생활폐기물<sup>1)</sup> 처리 시 폐기물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 입법의 취지

- 기술의 발달 및 주민 요구 다변화 추세에 맞춰 적합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식을 도입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감량기기를 지원하여 청소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온라인을 통해 수수료 납부 후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용하지 않은 신고확인증 등의  
환불 절차를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함.

- 안 별표 3에서는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세부적으로 조정함.

##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다변화된 시대에 맞게 온라인을 통한 폐기물 배출을  
가능하게 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 내  
용의 적정성을 갖춘 것으로 사료됨.

환경부(2022. 1.)

##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 가. 대형폐기물의 종류

-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폐기물
  - 가전제품류: 냉장고, 세탁기, 탈수기, 청소기, 가습기, 다리미, 팩스기기, 에어컨디셔너, 텔레비전, 전축, 컴퓨터, 스피커, 온풍기, 난로, 가스오븐렌지, 전자렌지, 선풍기 등
  - 가구류: 장롱, 응접세트, 식탁, 밥상, 싱크대, 책상, 책꽂이, 침대 목재및매트리스, 의자, 장식장, 화장대, 문갑, 서랍장, 옷걸이, 신발장 등
  - 생활용품: 쌀통, 벽시계, 인형류, 장남감류, 가방, 액자, 진열대, 캐비닛, 피아노, 기타 등
  - 기타: 문짝, 수족관, 거울, 자전거, 유모차, 깨진 유리, 항아리, 세면대, 변기통, 장판, 카펫, 목재, 플라스틱류, 폐소화기류 등

### 나. 대형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

- 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은 재활용센터에 연락하여 무상수거 되도록 안내 및 홍보
- 자치단체에서는 대형폐기물의 크기가 크고 무거운 점을 감안하여 배출 시 이동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및 배출체계 간소화 추진
- 대형폐기물의 배출과 수거는 주민편의 및 수거효율 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추진
  - ① 자치단체에서 배출 스티커 구입·배출
    -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해 배출인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신고하고 배출 스티커를 구입

- 수거전담반 직원이 배출원을 방문하여 배출스티커가 부착된 폐기물 수거

②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스티커 구입·배출

- 자치단체에서 배출스티커를 제작[폐기물부착용, 배출자 보관용(수수료납부필증) 2매]하여 봉투판매소에 판매

- 배출자는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스티커를 구입한 후 배출자명, 배출일시를 배출스티커에 기재 후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③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업체 지정 수거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전담하는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배출자가 대행업체에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해 신고 후 배출

- 대행업체에서 배출원을 방문하여 처리수수료를 징수한 후 현장에서 수거 (배출자에게 영수증 발급)

- 수거업체에서 처리수수료를 과다 징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실시

④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인터넷으로 신청 후 배출하는 방안 강구

- 처리 수수료 납부방법은 인터넷 신고와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은 출력 후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 위조 영수증의 불법 제작·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위조방지 프로그램 도입 등 대책 마련 필요

⑤ 재활용센터를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자로 지정 수거

- 재사용 가능 폐기물 확보, 주민편의 및 수거 효율 제고, 배출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등을 위해 재활용센터 활용 수거

○ 배출스티커 구입 장소 확대 및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분류하여 유사한 품목 간 수수료 차이를 줄이는 방안 강구

## 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산정

○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조례로 별도 규정하되,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



- 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하여 개별 품목별로 처리수수료를 정하여 부과
- 폐가전제품 등 생산자단체가 무상 처리하거나, 기타 재활용자가 무상처리하는 경우 처리비용을 제외한 수집·운반비용만을 처리수수료로 부과
  - 재활용센터의 대형폐기물 수거 참여에 따른 수거·운반, 처리예산 절감비용 등을 감안하여 처리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하 조정
    - 폐가전류는 권역별 리사이클링센터와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단계적으로 전량 무상수거로 전환
    - 폐가구류는 재사용 확대에 따른 처리비용 등을 차감하여 품목별 배출수수료 인하를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진
  - 장판, 카펫, 목재류, 플라스틱류 등 개별 품목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배출량에 차이가 많은 폐기물은 배출량(중량)에 따라 차등하여 처리수수료를 부과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산정·부과

#### 라.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환불에 관한 사항

- 대형폐기물의 배출자가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배출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기납부한 처리수수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도록 조치
  -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대형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 유형에 따라 환불규정을 마련하여 시·군·구 조례 개정 조치

#### 마.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

- 대형폐기물을 수거·운반하여 자치단체 집하장 또는 보관장소에 일시보관
  - 회수된 대형폐기물 중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재활용센터에 인계하여 재사용하도록 하거나, 민간 재활용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조치
- 대형폐기물의 직매립을 지양하고 파쇄시설을 설치하여 파쇄 후 소각 또는 처리
- 파쇄과정에서 분리된 고철 등 재활용가능품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2]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평 창 군 수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8
----------	-----

제출년월일 : 2024. 5. 7.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추가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변경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유도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안 제5조제1항, 제5조제4항)

- 1) 대형폐기물의 배출 방법 추가
- 2) 사용하지 않은 스티커(신고확인증) 환불 방법 변경

### 나. [별표 3]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변경

-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 변경
- 2) 대형폐기물의 품목 수수료 변경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4. 1. ~ 2024. 4.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5) 법제심사 : 적정[기획실-6696(2024. 4. 26.)]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실-6890(2024. 4. 30.)]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형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으로 신고 후 폐기물에 신고확인증 부착 또는 신고번호를 기입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을 통하여 별표 3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신고번호를 부착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④ 사용하지 않은 신고확인증 등을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서)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접수 후 20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 중 “대해”를 “대하여”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제10조제2항 관련)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b>가전제품류(20품목)</b>			<b>가구류(16품목)</b>			<b>기타(17개 품목)</b>			
냉장고	1,000ℓ이상	20,000	장롱	120cm 1쪽	15,000	창	목재(쪽당)		
	500ℓ이상	9,000		90cm 1쪽	12,000		대형(높이1.5m이상)	3,000	
	300ℓ이상	7,000	식탁	대리석식탁	15,000		중형(높이1.0m이상)	2,500	
	300ℓ미만	6,000		6인용 이상	7,000		소형(높이1.0m미만)	2,000	
세탁기	모든규격	5,500	밥상	6인용 미만	6,000		새시(쪽당)		
탈수기	모든규격	3,000		6인용 이상	3,000		대형(높이1.5m이상)	4,000	
청소기	모든규격	3,000	싱크대	6인용 미만	2,000		중형(높이1.0m이상)	3,000	
가습기	모든규격	2,000		길이 2m이상	7,000		소형(높이1.0m미만)	2,000	
다리미	모든규격	1,000	책상	길이 2m미만	5,000	일반문	목재(쪽당)	3,000	
팩스기기	모든규격	2,000		양수, 대형	7,000		새시(쪽당)	대 형	12,000
			편수, 소형	6,000	중 형	8,000			
			책꽂이	모든규격	2,000	침대목재	모든규격	2,000	소 형
에어컨	264m <sup>2</sup> 이상	8,000	침대목재	퀵사이즈이상	8,000	거울	높이1m이상	5,000	
	66m <sup>2</sup> 이상	7,000		2인용	7,000		높이1m미만	3,000	
	66m <sup>2</sup> 미만	5,000	매트리스	1인용	5,000		자전거	운동기구용	7,000
텔레비전	42인치이상	8,000		퀵사이즈이상	9,000	성인용(2발)		4,000	
	12인치이상	5,000		2인용	8,000			아동용(2-3발)	3,000
	42인치미만		1인용	6,000	유모차	모든규격	2,000		
	12인치미만	3,000	의자	응접세트 용 원목 100cm 이상		7,000	깨진 유리	kg당 (마대에 담아 배출)	500
오디오	대형	5,000		응접세트용 원목 100cm 미만	5,000	항아리		대형	2,000
	소형	3,000		소형 모든규격	2,000		소형	1,500	
컴퓨터	본체(노트북 포함)	3,000	장식장	5단이상	8,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모니터	3,000		4단이상	6,000	변기통	모든규격	4,000	
	키보드	1,000	화장대	모든규격	6,000	장판	kg당	500	
	프린터 대형(레이저)	5,000	문갑	모든규격	5,000	카펫 (카튼류)	kg당	500	
	프린터 소형(잉크젯)	3,000	서랍장	5단이상	6,000	목재	kg당	500	
스피커	높이1m이상	3,000	옷걸이	모든규격	2,000	플라스 틱류	kg당	500	
	높이1m미만	2,000	신발장	모든규격	4,000	페소 화기류	3.3kg이하	2,000	
온풍기	264m <sup>2</sup> 이상	8,000	소파	대형(4인이상)	9,000		3.3kg초과~19kg이하	5,000	
	66m <sup>2</sup> 이상	7,000		중형(3인)	7,000	19kg초과	10,000		
	66m <sup>2</sup> 미만	5,000		소형(1~2인)	5,000	보드	스키, 보드	4,000	
난로	33m <sup>2</sup> 이상	4,000	<b>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b>			부츠	(스키,보드용)		3,000
	33m <sup>2</sup> 미만	3,000	<b>생활용품류(8개 품목)</b>				모든규격		
가스오 븐레인지	높이1m이상	5,000	벽시계	대 형	3,000				
전자레 인지	높이1m미만	4,000		중·소형	1,000				
	모든규격	3,000	인형류	모든규격	1,000				
선풍기	업소용(대형)	5,000	장난감류	대형(미끄럼틀, 놀이집 등)	5,000				
	가정용(소형)	3,000		중·소형	1,000				
공기청 정기	높이1미터 이상	6,000	가방	여행용가방 높이 100cm이상 (골프백,캐리어등)	4,000				
	높이1미터 미만	3,000		여행용가방 높이 60cm이상	2,000				
온수매트 (전자장판)	더블	5,000		여행용가방 높이 60cm미만	1,000				
안마의자	싱글	3,000	액자	길이 2m이상	6,000				
	대형(전신)	20,000		길이2m 미만	4,000				
중·소형(반신)	10,000	진열대		길이 1m이상	2,000				
				길이 1m미만	1,000				
		캐비닛	길이 1m이상	5,000					
			길이 1m미만	3,000					
		피아노	모든규격	6,000					
			그랜드	20,000					
			업라이트	15,000					

※ 상기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으로 수수료를 준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p> <p>1. 2. (생략)</p> <p>3. <u>대형폐기물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으로 신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발급받아 배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처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u></p> <p>4. (생략)</p> <p>②·③ (생략)</p> <p>④ <u>사용하지 않은 스티커를 환불받으려는 사람은 스티커를 구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별지 제4호 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u></p>	<p>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대형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으로 신고 후 폐기물에 신고확인증 부착 또는 신고번호를 기입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을 통하여 별표 3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신고번호를 부착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u></p> <p>4.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사용하지 않은 신고확인증 등을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서)을 작성</u></p>

신고서)을 작성하여 반납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변경)신고 접수·처리대장)에  
적고 20일 이내에 환불한다.

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읍·면  
장은 접수 후 20일 이내에 환불  
하여야 한다.



### [별표3]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3]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제10조2항 관련)			[별표3]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제10조2항 관련)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비고
가전제품류(17품목)			가전제품류(20품목)			
냉장고	500ℓ이상	8,500	냉장고	1,000ℓ이상	20,000	규격추가
	300ℓ이상	7,000		500ℓ이상	9,000	▲500
	300ℓ미만	6,500		300ℓ이상	7,000	
		300ℓ미만		6,000	▼500	
세탁기	모든규격	5,500	세탁기	모든규격	5,500	
탈수기	모든규격	3,500	탈수기	모든규격	3,000	▼500
청소기	모든규격	2,000	청소기	모든규격	3,000	▲1,000
가습기	모든규격	1,000	가습기	모든규격	2,000	▲1,000
다리미	모든규격	1,000	다리미	모든규격	1,000	
팩스기기	모든규격	2,000	팩스기기	모든규격	2,000	
에어컨	264m <sup>2</sup> 이상	8,000	에어컨	264m <sup>2</sup> 이상	8,000	
	66m <sup>2</sup> 이상	7,000		66m <sup>2</sup> 이상	7,000	
	66m <sup>2</sup> 미만	5,000		66m <sup>2</sup> 미만	5,000	
텔레비전	42인치이상	8,000	텔레비전	42인치이상	8,000	
	12인치이상	5,000		12인치이상	5,000	규격추가
				12인치미만	3,000	
오디오	대형	5,000	오디오	대형	5,000	
	소형	3,000		소형	3,000	
컴퓨터	일반형	3,000	컴퓨터	본체(노트북 포함)	3,000	규격및수수료 변경
	노트북	1,500		모니터	3,000	규격및수수료 변경
		키보드		1,000	규격및수수료 변경	
		프린터 대형(레이저)		5,000	규격및수수료 변경	
		프린터 소형(잉크젯)		3,000	규격및수수료 변경	
스피커	높이1m이상	5,000	스피커	높이1m이상	3,000	▼2,000
	높이1m미만	3,000		높이1m미만	2,000	▼1,000
온풍기	264m <sup>2</sup> 이상	8,000	온풍기	264m <sup>2</sup> 이상	8,000	
	66m <sup>2</sup> 이상	7,000		66m <sup>2</sup> 이상	7,000	
	66m <sup>2</sup> 미만	5,000		66m <sup>2</sup> 미만	5,000	
난로	33m <sup>2</sup> 이상	4,000	난로	33m <sup>2</sup> 이상	4,000	
	33m <sup>2</sup> 미만	3,000		33m <sup>2</sup> 미만	3,00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이상	5,500	가스오븐 레인지	높이1m이상	5,000	▼500
	높이1m미만	3,000	레인지	높이1m미만	4,000	▲1,000
전자레인지	모든규격	2,000	전자레인지	모든규격	3,000	▲1,000
선풍기	모든규격	1,500	선풍기	업소용(대형)	5,000	규격및수수료 변경
				가정용(소형)	3,000	규격및수수료 변경
공기청정기	높이1미터 이상	6,000	공기청정기	높이1미터 이상	6,000	품목추가
	높이1미터 미만	3,000		높이1미터 미만	3,000	품목추가
온수매트 (전기장판)	모든규격	2,000	온수매트 (전기장판)	더블	5,000	품목추가
				싱글	3,000	품목추가
선풍기	모든규격	1,500	안마의자	대형(전신)	20,000	품목추가
				중.소형(반신)	10,000	품목추가

## 현 행

[별표3]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제10조2항 관련)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b>가구류(16품목)</b>		
장롱	120cm 1쪽	15,000
	90cm 1쪽	10,000
응접세트	장의자	7,000
	의 자	5,000
식탁	6인용 이상	7,000
	6인용 미만	6,000
밥상	4인용 식탁	2,000
	4인용 미만	1,500
싱크대	길이 2m이상	7,000
	길이 2m미만	5,000
책상	양수, 대형	7,000
	편수, 소형	6,000
책꽂이	모든규격	2,000
침대목재	2인용	5,000
	1인용	3,000
매트리스	2인용	5,000
	1인용	3,000
의자	모든규격	2,000
장식장	5단 이상	8,000
	5단 이하	6,000
화장대	모든규격	6,000
문갑	모든규격	5,000
서랍장	5단 이상	6,000
	4단 이상	5,000
옷걸이	모든규격	2,000
신발장	모든규격	4,000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b>생활용품류(9개 품목)</b>		
필통	모든규격	3,000
벽시계	대 형	2,000
	중소형	1,000
인형류	모든규격	1,000
장난감류	모든규격	1,000
가방	모든규격	1,000

## 개 정 안

[별표3]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제10조2항 관련)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비고
<b>가구류(16품목)</b>			
장롱	120cm 1쪽	15,000	▲2,000
	90cm 1쪽	12,000	
응접세트	삭제		의자항목에편입
식탁	대리석식탁	15,000	규격추가
	6인용 이상	7,000	
	6인용 미만	6,000	
밥상	6인용 이상	3,000	규격 및 수수료 변경
	6인용 미만	2,000	규격 및 수수료 변경
싱크대	길이 2m이상	7,000	
	길이 2m미만	5,000	
책상	양수, 대형	7,000	
	편수, 소형	6,000	
책꽂이	모든규격	2,000	
침대목재	퀵사이즈이상	8,000	규격추가
	2인용	7,000	▲2,000
	1인용	5,000	▲2,000
매트리스	퀵사이즈이상	9,000	규격추가
	2인용	8,000	▲3,000
	1인용	6,000	▲3,000
의자	응접세트 용 원목 100cm 이상	7,000	규격변경
	응접세트용 원목 100cm 미만	5,000	규격변경
	소형 모든규격	2,000	규격변경
장식장	5단이상	8,000	
	4단이상	6,000	
화장대	모든규격	6,000	
문갑	모든규격	5,000	
서랍장	5단 이상	6,000	
	4단 이상	5,000	
옷걸이	모든규격	2,000	
신발장	모든규격	4,000	
소파	대형(4인이상)	9,000	품목추가
	중형(3인)	7,000	품목추가
	소형(1~2인)	5,000	품목추가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비고
<b>생활용품류(8개 품목)</b>			
필통	삭제		
벽시계	대 형	3,000	▲1,000
	중소형	1,000	
인형류	모든규격	1,000	
장난감류	대형(미끄럼틀, 놀이집 등)	5,000	규격추가
	중·소형	1,000	
가방	여행용가방 높이 100cm이상 (골프방카리어등)	4,000	규격및수수료 변경
	여행용가방 높이 60cm이상	2,000	규격및수수료 변경
	여행용가방 높이 60cm미만	1,000	규격및수수료 변경

## 현 행

[별표3]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제10조2항 관련)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b>생활용품류(9개 품목)</b>		
액자	길이 1m이상	1,500
	길이 1m미만	1,000
진열대	길이 1m이상	5,000
	길이 1m미만	3,000
캐비닛	모든규격	6,000
피아노	업라이트	11,000
	그랜드	15,000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b>기타(15개 품목)</b>		
창	목재(쪽당)	
	대형(높이1.5m이상)	3,000
	중형(높이1.0m이상)	2,500
	소형(높이1.0m미만)	2,000
	새시(쪽당)	
	대형(높이1.5m이상)	4,000
	중형(높이1.0m이상)	3,000
	소형(높이1.0m미만)	2,000
일반문	목재(쪽당)	3,000
	새시(쪽당)	4,000
수족관	대 형	12,000
	중 형	8,000
	소 형	4,000
거울	높이1m이상	5,000
	높이1m미만	3,000
자전거	성인용(2발)	3,000
	아동용(2발)	2,000
	아동용(3발)	2,000
유모차	모든규격	2,000
깨진유리	kg당 (마대에 담아 배출)	500
항아리	대형	2,000
	소형	1,5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변기통	모든규격	3,500
장판	kg당	500
카펫	kg당	500
목재	kg당	500
플라스틱류	kg당	500
폐소화기류	3.3kg이하	2,000
	3.3kg초과~19kg이하	5,000
	19kg초과	10,000

## 개 정 안

[별표3]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제10조2항 관련)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비고
<b>생활용품류(8개 품목)</b>			
액자	길이 2m이상	6,000	규격추가
	길이2m 미만	4,000	규격추가
	길이 1m이상	2,000	
진열대	길이 1m미만	1,000	
	길이 1m이상	5,000	
캐비닛	모든규격	3,000	
캐비닛	모든규격	6,000	
피아노	그랜드	20,000	▲5,000
	업라이트	15,000	▲4,000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비고
<b>기타(17개 품목)</b>			
창	목재(쪽당)		
	대형(높이1.5m이상)	3,000	
	중형(높이1.0m이상)	2,500	
	소형(높이1.0m미만)	2,000	
	새시(쪽당)		
	대형(높이1.5m이상)	4,000	
	중형(높이1.0m이상)	3,000	
일반문	목재(쪽당)	3,000	
	새시(쪽당)	4,000	
	대 형	12,000	
수족관	중 형	8,000	
	소 형	4,000	
	높이1m이상	5,000	
거울	높이1m미만	3,000	
	운동기구용	7,000	규격 추가
자전거	성인용(2발)	4,000	규격 및 수수료 변경
	아동용(2-3발)	3,000	규격 및 수수료 변경
	유모차	모든규격	2,000
깨진유리	kg당 (마대에 담아 배출)	500	
	대형	2,000	
항아리	소형	1,500	
	모든규격	3,000	
변기통	모든규격	4,000	▲500
장판	kg당	500	
카펫 (커튼류)	kg당	500	규격추가
목재	kg당	500	
	kg당	500	
폐소화 기류	3.3kg이하	2,000	
	3.3kg초과~19kg이하	5,000	
	19kg초과	10,000	
보드	스키, 보드	4,000	품목추가
부츠	(스키,보드용 모든규격	3,000	품목추가

# 관계법령 발췌

##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 발생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건설국 환경과장 전원표
연락처	(033) 330 - 2340